「학칙 및 학칙시행세칙」 개정(안) 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 안내

「학칙 및 학칙시행세칙」 개정을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7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8. 10. 16(화) 12:00까지 자유 양식에 따라 기재한 의견을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제출처 : 교무처 교무팀

– 이메일(haksa@konyang.ac.kr) / 전화번호 : 041-730-5121

붙임 :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(안) 1부. 끝.

2018년 10월 05일

교 무 처 장

「학 칙」 개정(안)

❑ 개정 사유

❍ 유학생 유치의 다양화를 위하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진행하는「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」수료자들을 우리 대학 입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필요

❑ 관련 근거

❍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6호

❑ 신구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의 5(타 대학 및 기관 상호인정학점) ① 국내외 대학 및 기관 중 상호교류 대학 및 기관으로 인정된 대학 및 기관에 한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 취득한 성적은 방학 중 6학점(최대 3회 이내), 학기당 17학점, 연 총 33학점 이내에서 상호 인정할 수 있다. ②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	제38조의 5(타 대학 및 기관 상호인정학점) ① <현행과 같음> ② 입학 전 국립국제교육원의 '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'을 이수한 경우, 소정의 학점인정 확인절차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③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<신 설>	부 칙 1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

「학 칙」 개정(안)

❑ **개정 사유**

❍ 군복무경험 학점 인정 시행에 대한 관련 규정 마련

- 군복무경험 학점 인정 : 사회봉사 Ⅰ/Ⅱ

❑ **관련 근거**

❍ 대한민국 정부(2017.10.) 국정운영 5개년 계획, 100대 국정과제 #89-3, 군 복무 학점 인정 추진 및 장병 자기개발 지원 강화

❍ 법률 제15038호(2017.11.28.) 고등교육법 제23조(학점의 인정 등)

❍ 국방부-협약대학(2018.8.20.)「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」업무 협약

❑ **신구대조표**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이수학점) ① ~ ③ <생 략> ④ 휴학 중인 자가 병역 복무기간 중 소정의 등록 및 수강절차를 거쳐 취득한 학점은 최대 12학점 이내서 인정한다.	제38조(이수학점) ① ~ ③ <생 략> ④ 휴학 중인 자가 병역 복무기간 중 소정의 등록 및 수강절차를 거쳐 취득한 학점과 **국방부에서 인정하는 군복무경험 학점을 포함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,** 최대 12학점 이내서 인정한다.
<신 설>	부 칙 1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